

의안  
번호

537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 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11. 21.

전문위원 김동성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성북구청장

나. 의안번호 : 제537호

다. 제출일자 : 2025. 11. 12.

라. 회부일자 : 2025. 11. 14.

2. 제안이유

-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를 2018년 1월 1일 인상 이후 7년간 동일하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간 인건비, 유류비, 장비유지비 등의

상승으로 실제 서비스 원가와 현행 수수료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음. 이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수수료 인상이 필요함에 따라 [별표 1]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  
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인상
- 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안 별표1)
  - 1) 기본요금 2,100원(9.3%) 인상 (22,500원 → 24,600원)
  - 2) 초과요금 365원(17%) 인상 (2,150원 → 2,515원)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5. 09. 25. ~ 2025. 10. 15.
  - 의 견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개요

- 본 개정안은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인건비·유류비 등 원가 상승 요인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안 [별표 1] 중 개인하수처리시설 부문 중 기본 부과금액 22,500원 → 24,600원으로, 초과 부과금액을 2,150원 → 2,515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분뇨 및 할증요율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는 내용임.

<별표1 개정 사항>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u> <u>부과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u> 〔 단위 : 원 〕				<u>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u> <u>부과기준(제9조제1항과 관련)</u> 〔 단위 : 원 〕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구 분	부과기준	부과금액	비고
분뇨	18ℓ	280		분뇨	18ℓ	28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m <sup>3</sup>	22,500	개인 하수 처리 시설	기본	0.75m <sup>3</sup>	24,600
	초과	0.1m <sup>3</sup> 당	2,150		초과	0.1m <sup>3</sup> 당	2,515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지하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야간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공휴일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공휴일 할증	정화조 청소요금	7%

- 성북구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는 2018년 이후 7년간 동결되어 인건비, 차량 유지비 등 물가상승 요인이 반영되지 못한 실정이며, 이에 따라 관련 운반 대행업체로부터 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한편, 서울특별시의 ‘분뇨 수집·운반 원가분석 용역(2023.5.)’ 결과에 따르면 성북구의 경우 기본요금 33.8%, 초과요금 33.5% 인상 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권고되었으며, 본 개정안은 해당 권고안보다 완화된 수준에서 인상안을 마련한 것임.

**<서울시 분뇨수거 원가분석 결과('23. 5.)>**

구 분	정 화 조	
	기본요금( $0.75\text{m}^3$ )	초과요금( $0.1\text{m}^3$ )
현 재	22,500원	2,150원
서울시 원가분석 권고안	30,100원(33.8%)	2,870원(33.5%)

- 본 인상안은 성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것으로, 장기간 동결된 수수료를 합리적 수준에서 조정하여 공공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확보하려는 정책적 판단이 반영된 것임.

## □ 종합의견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를 현실화하려는 것으로, 동 수수료는 2018년 이후 7년간 동결되어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인상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실정임. 또한 서울시 관련 용역 결과에서도 인상의 필요성이 확인되었으며, 주민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서울시 권고안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조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수수료 인상의 필요 요건을 충족하고 합리적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사료됨.